코로나19 극복을 위한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5차 개정) 2020.12.07(월)

■5차개정 [제107차 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학생지원팀 2020. 12. 07(월)] / <mark>긴급 감염병관리위원회 논의 자료</mark> ■4차개정 [<u>제98차 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학생지원팀 2020. 11. 10(화)</u>] ■부분개정: 2020.11.24.(화) 2단계 지역 비대면 수업원칙

■관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0.12.06.) "수도권 2.5단계 결상('20.12.08~)" 및 교내 관련부서 논의

■관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0.12.06.) " <u>수도권 2.5단계 격상("20.12.08~)</u> " 및 교내 관련부서 논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HYU 사회적 거리두기(4차 개정)							
구 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발열검사			<u>* 전 건물 유인검사 또는 원격 모니터링</u>				
수 업			대면·원격(비대면) 수업			원격(비대면) 수업	
			<u>※ 대면 -</u>		<u>* 대면 수업 실시</u> - 실험·실습 수업		원격(비대면) 수업
			- 실험·실습 수업 - 학부·대학원 소규모 이론 강좌		글 다 글 다 구 다 - 학부 대학원 소규모 이론 강좌 (대학원 11.24부 비대면 긴급적용)	* 불가피한 경우 대면	
시 험			대면·원격 시험(병행)			원격(비대면) 시험 ※ 불가피한 경우 대면	원격(비대면) 시험
회의·집합· 모임·행사 (<u>식사·다과제공 금지,</u> <u>뒷풀이 금지</u>)			☞ 부서장 승인 <단과대학, 대학원, 본 - 실내·외 1~49명	부부서 ,부속기관장>	☞ 부서장 승인 〈단과대학, 대학원, 본부부서 ,부속기관장〉 - 실내외 1∼19명		☞ <mark>부서장 승인</mark> 《단과대학, 대학원, 본부부사 ·부속기관장》
			▶ 감관위 승인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 감관위 승인 - 실내 20~49명 - 실외 20~99명		▶ 감관위 승인 - 실내·외 1~9명
			*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실내외 10인 이상 금지
대관행사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외부기관 대관, 행사 : 원칙적 불허 단, 제한적 허가(<u>감염병관리위원회 승인에 의함</u>) 1. 교내 연구(교수)자 관련 연구 및 학회 행사 ① 요청(주관) 부서 → ② 승인 요청(학생지원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요청(관재팀) 2. 국가 및 공공기간의 시험(행사) ① 국가(공공)/관 → ② 승인 요청(관재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승인(관재팀)			전면 금지	
행정실			정상 근무 (유연 근무 <u>권고</u>)			1/2 재택 근무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대학원 연구실			정상 근무 (유연·재택근무 <u>권고</u>)	1/3 재택 근무 (유연·재택근무 <u>활성화</u>)		1/2 이상 재택 근무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주중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도서 대출반납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백남학술 정보관 (학기중)	주말		휴 관				
	중간 : 기말고사	주중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토	▶ 열람실 09:00∼17:00 / ▶ 자료실 09:00∼12:00 휴 관				
		일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 휴실				
식당·	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m 이상)				제한적 운영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09:00~17:00 운영 중단				
			* 교내 구성원 / 예약제 운영 / 실외 체육시설에 한함 / 운동장 트랙 및 농구장 사용 불가				
학생자치시설 (학생회실, 동아리실)			폐 쇄				
			□ 1단계 : 조건부 개방 고려(①학생회에서 자체 방역지침 마련→ ②감관위 승인→ ③방역지침 준수)※ 학생대표체인 총학생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준비				

※ <u>공통사항 : 단계별 방역수칙 반드시 준수</u>

①마스크 착용, ②출입자 명부작성 및 관리(QR-PASS 또는 수기) ③출입자 증상 학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④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최소 1m 간격 유지) ⑤손소독제 비치 ⑥환기 및 소독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중대본) ①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②행정조치 및 현장점검 ③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④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⑤시설 운영중단 명령 (대 학) ⑥과태료 및 벌금 납부 ⑦고발 ⑧확진자 발생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⑨시설운영 중단